

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미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15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3. 14.

발의자 : 문미옥 · 최인호 · 신경민
박영선 · 홍익표 · 김정우
인재근 · 박정 · 유승희
우원식 · 추혜선 · 김현미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·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,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.

그런데 법이 제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,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등).

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매년 실시하여”를 “실시하여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한국과학기술원 및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”을 “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중 “여성과학기술인에”를 “여성과학기술인 등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연수(研修)나 연구 활동을”을 “교육이나 훈련·연구 활동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이들의”를 “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 대학 등에 여성

과학기술인의”로, “비율 및”을 “비율, 재직목표 비율 및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중 “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”를 “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”를 “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”를 “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”로 한다.

1.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
2.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
3. 여성과학기술인의 일·가정 양립 연구문화 환경 조성
4.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 업무

제16조의 제목 중 “위탁”을 “위탁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계대학등”이라 한다)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,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8조(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해당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10조(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
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
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

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
원 및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
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
원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여성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지원) ① -----

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
외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
에서 연수(研修)나 연구 활동을
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
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〈신 설〉

② (생략)

제11조(적극적 조치) ① 국가 및
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
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
기술 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
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
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
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및
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
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
적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제12조(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
의 지정) ① 과학기술 분야의
연구기관 등 여성과학기술인의

교육이나 훈련·연구 활동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
지정) ① -----

많이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,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 지정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6조(권한의 위탁) (생략)

<신 설>

-----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

1.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
2.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
3. 여성과학기술인의 일·가정

양립 연구문화 환경 조성

4.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 업무

② -----
-----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

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권한의 위탁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